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黃 振 洙

國民年金基金의 運用方案에
관한 研究

- 國民年金會館의 活性化 方案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lan of Invest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Welfare Facilities

- Especiall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National Pension Center -

2001年 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李 德 熙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黃 振 洙

國民年金基金의 運用方案에
관한 研究

- 國民年金會館의 活性化 方案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lan of Invest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Welfare Facilities

- Especiall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National Pension Center -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李 德 熙

李德熙의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1年 2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3
II. 國民年金基金의 福祉投資事業에 대한 理論的 考察	5
1. 國民年金基金의 性格.....	5
1) 基金의 運用原則.....	5
2) 基金運用計劃의 樹立 및 執行.....	8
2. 國民年金基金의 管理運用.....	10
1) 基金의 造成 및 運用.....	10
2) 基金運用 制度改善.....	15
3. 國民年金基金 福祉投資事業의 管理와 運用.....	20
1) 福祉投資事業의 定義와 範圍.....	20
2) 福祉投資事業의 背景.....	21
3) 福祉投資事業의 必要性.....	23
4) 福祉投資事業의 管理運用.....	25
4. 福祉投資事業에서의 年金會館 活性化를 위한 分析模型.....	28

1) 法的, 制度的 次元.....	29
2) 施設, 管理運營 次元.....	30
3) 綜合 및 提言.....	30
III. 國民年金會館運用 現況.....	32
1. 國民年金會館事業의 意義.....	32
1) 年金會館 確保의 根據.....	32
2) 年金會館의 必要性과 機能.....	35
2. 國民年金會館運營 現況.....	37
1) 全體會館 現況.....	37
2) 運營중인 會館.....	38
3. 他公的年金會館 運營實態 및 示唆點.....	47
1) 國內 他機關會館의 運營 現況.....	48
2) 日本 厚生年金會館 運營 現況.....	55
IV. 國民年金會館運營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66
1. 國民年金會館運營의 問題點.....	66
1) 法的, 制度的 次元의 問題.....	66
2) 施設管理運營上の 問題.....	69
2. 年金會館運營의 改善方案.....	70

1) 法的, 制度的 改善方案.....	71
2) 施設管理運営の 改善方案.....	73
V. 結論.....	76
参考文献.....	80
附 録.....	84
ABSTRACT.....	86

表 目 次

< 표 2-1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현황.....	10
< 표 2-2 >	연도별 국민연금기금 수입현황.....	15
< 표 2-3 >	부문별 기금배분 현황.....	17
< 표 2-4 >	국민연금기금 부문별 수익률 추이.....	21
< 표 2-5 >	주요국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	23
< 표 2-6 >	국민연금법 관련조문.....	25
< 표 2-7 >	복지사업의 분류.....	26
< 표 2-8 >	기금은용 현황.....	30
< 표 2-9 >	복지부문투자 현황.....	30
< 표 3-1 >	연금회관 규모지침.....	33
< 표 3-2 >	연금회관 관리운영상 문제점.....	34
< 표 3-3 >	연금회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34
< 표 3-4 >	전체회관.....	37
< 표 3-5 >	경남회관 사업평가.....	40
< 표 3-6 >	광주회관 입지적 장·단점	41
< 표 3-7 >	광주회관 사업평가.....	42
< 표 3-8 >	대전회관 사업평가.....	43
< 표 3-9 >	대구회관 사업평가.....	44
< 표 3-10 >	일본후생연금 복지시설사업 개요.....	57

< 표 3-11 >	후생연금보험 수입액 및 지출액 대비 복지시설비 비중.....	61
< 표 4-1 >	국민연금회관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	68
< 표 4-2 >	타기관회관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	69
< 표 4-3 >	연금회관 규모에 대한 지침의 변경.....	72
< 표 5-1 >	신규회관 확보시 건축규모 적용(안).....	77

圖 目 次

<그림 2-1> 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27
<그림 2-1> 연금회관 분석모형.....	31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¹⁾ 즉 연금가입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일정률을 적립해 두었다가 노후에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등으로 소득의 감퇴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므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²⁾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2000년 6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16,686천명에 달하고 53조원의 적립기금이 조성되었다.³⁾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자금은 그 투자방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제도 자체의 안정에 필수적인 재정안정 및 국민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공공·금융·복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투자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자원배분을 통한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 및 연금재정의 안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문에 치중하는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공공부문의 투자비중 축소, 금리인하추세 등은 투자대체수단으로서 복지사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방안으로 실물투자 복지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대두시키고 있다.

1) 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

2)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제도」, 1997. p. 5.

3)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제도 도시지역 확대시행 1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2000. p. 253

또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시점간의 장기적인 시차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연금가입자의 불신도 대두되고 있어 가입자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 실시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⁴⁾

한편, 사회적으로도 민주화의 진전,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등에 따른 국민복지 요구의 표출 통로가 마련된 점, 소득수준의 급격한 증가 및 세계화·국제화시대 도래 등으로 인하여 복지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핵가족화·인구고령화 등의 진전은 국민의 복지욕구를 다양화·다변화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사회복지정책도 복지공급의 민영화·유료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복지수요·공급 양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⁵⁾

이러한 제도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령상의 사업과제로서 국민연금 복지투자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기본추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복지시설사업의 경우는 가입자의 복지증진과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복지시설사업은 수익성과 복지성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개시후 10년이 되는 현재 그 동안의 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국민연금 복지시설사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새롭고 점진적인 사업방향의 설정과 장단기적인 사업추진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4) 김성숙외, 「국민연금 실물투자 방안연구」, (서울 : 국민연금연구센터, 1998), p. 1.

5)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 p. 439.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현재 국민연금의 복지시설사업은 국민연금회관사업과 국민연금 복지휴양 시설사업의 2가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연금회관사업은 1991년에 시작하여 10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국민연금 복지휴양시설사업은 1994년에 시작하여 2000년 9월 29일에 개장을 하였으며,⁶⁾ 이 중 연금회관의 매입이나 건립을 통한 연금회관 확보는 연금의 운영을 위한 상설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실물투자를 통하여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에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금회관의 확보사업은 현재 일부만 완성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부분은 계획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금회관의 건물과 시설의 확보 뿐만 아니라 그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⁷⁾

본 연구는 V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다루면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연구의 방향 및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미흡과 수익률 저하 등으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였던 기금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복지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고찰하여 복지시설사업의 의미를 조명하고, 제 III 장에서는 먼저 연금회관의 필요성과 기능을 정리하고, 연금회관운영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IV 장에서는 국민연금회관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금회관운영의 발전방향을

6) <http://www.npc.or.kr>

7) 이용하 외,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서울 : 국민연금연구센터, 1995), p. 16.

모색하고, 앞으로 연금회관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과 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토지와 건물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와 국내·외의 공적연금 기금에 의한 복지시설투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들이 국민연금에 갖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연금회관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장인 제V장은 주요 논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Ⅱ. 國民年金基金 福祉投資事業의 理論的 考察

1. 國民年金基金의 性格

1) 기금의 운용원칙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 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되었다.⁸⁾

따라서 연금기금은 연금가입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된 장기 신탁자산으로서 연금가입자들이 일정한 급여지급 조건에 도달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장기부채성 책임준비금이다. 이 기금은 정부의 재정부담없이 가입자의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금 등 순수한 민간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장기가입(20년 가입, 60세 도달시 지급)을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상당한 규모로 적립되고 있다.⁹⁾ 2000년 6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규모는 약 5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1년경에는 최고 355조원까지 적립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유지하고, 연금가입자에 대한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8) 국민연금법 제8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9)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0년사」, 1998, p. 337.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기금운용에서 이러한 세가지 요소를 균형적으로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가지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각국이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제 여건에 따라 어느 한 시점에서 세가지 요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연금기금의 운용방향을 결정한다.¹⁰⁾

(1) 수익성 원칙

연금기금의 이식수입은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식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기금은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 복지사업 및 주식투자를 제외한 기금운용수익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기금은 금융권별로 수익률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 1-3개를 선정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수익률에 따라 금융기관별 일정비율로 차등 투자하고 있다.

(2) 안정성 원칙

가입자의 장기신탁자산이며 연금급여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 기금은 투자손실이 없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은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특정

10) 민재성 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1986, pp. 135-136.

금융기관에 편중됨이 없이 금융기관별로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채권 매입시에도 국공채나 보증사채 등 투자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3) 공공성 원칙

기금은 그 규모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운용방법 여하에 따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 공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금은 현재 금융시장의 건전한 자금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별·상품별로 분산투자되고 있으며, 공공부문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중소기업지원, 농어촌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원칙은 상호 균형적으로 추구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상의 3가지 원칙들은 상호간에 상충효과가 있어 한가지 원칙을 중시하면, 다른 원칙은 희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가지 원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 세가지 원칙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연금기금의 운용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수익성이 극대화되도록 기금운용을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기타 금융부문의 투자 등 모든 투자는 이러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수단들로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투자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연금기금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배분비율, 복지부문 투자확대, 공공부문 투자사업의 종류 및 우선순위, 공공부문 이자율, 금융부문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등 많은 쟁점들의 운용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¹¹⁾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

국민연금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의 차관과 관련단체의 대표,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표 2-1> 참조)

<표 2-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위원수	참 여 단 체
계	21인	
정부인사	7인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차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사용자 대표	3인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 대표	3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금융노련
지역가입자 대표	4인	농협, 수협, 공인회계사회, 음식업중앙회
시민사회단체	2인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관계전문가	2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전게서, 「국민연금 10년사」, p. 338.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작성되어 제출된 익년도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말까지 심의·의결하여 익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¹²⁾ 이 지침은 ① 공공사업에 사용할 연금기금의 비율, ②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③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이와 같이 확정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 당해연도에 기금을 운용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즉,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액 및 지출액과 적립액 및 그 운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 제반 기준을 설정한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당해연도 기금운용의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가입자인 국민에게 정보제공 및 운용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연금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품별 투자규모와 거래기관 선정방법, 금융기관별 배분기준 등을 정한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시달하며 공단은 이 계획에 따라 「월자금

12) 장길훈, 「국민연금기금의 장기관리·운용조직 방안」, (서울 : 국민연금연구센터, 1999), p. 99.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한다. 국민연금
금의 운용실적은 매분기별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되며, 연도별 운용실적은
동 운영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국회에
보고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결과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분야 특수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있다.¹³⁾(부록 참조)

2. 國民年金基金의 管理・運用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전입금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여 국민연금기금에 일단 입금시킨 후에
예상급여비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배정받아 이를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하
도록 되어 있다.¹⁴⁾

이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13)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0년사」, pp. 339-340.

14) <http://www.npc.or.kr>

현재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계리업무는 동 공단에 위탁되어 있고 동 공단에서는 일반회계와는 구분하여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별도로 계리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연금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이

<표 2-2> 연도별 국민연금기금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연금보험료	운용수익금	전입금	결산잉여금
계	44,851,524	32,568,480	12,274,926	335	8,118
'88	528,221	506,931	20,110	335	845
'89	712,013	627,885	79,865	-	4,263
'90	1,019,279	834,005	184,863	-	411
'91	1,279,530	984,802	294,263	-	465
'92	1,662,842	1,223,419	439,423	-	-
'93	3,222,743	2,639,352	583,391	-	-
'94	4,351,519	3,325,775	1,015,744	-	-
'95	5,393,504	3,966,312	1,427,192	-	-
'96	6,868,736	4,943,556	1,925,180	-	-
'97	8,162,182	5,675,727	2,484,321	-	2,134
'98	11,661,290	7,840,716	3,820,574	-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88~1998.

기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기금의 회계업무를 발생주의에 입각한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8년 12월 말 현재 총조성액은 44,851,524백만원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재원은 연금보험료인데 이것은 총조성액의 72.6%인 32,562,206백만원이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금은 12,274,926백만원으로서 총조성액의 27.4%이다. 그리고 전입금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그 잔여액이 1998년에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입된 금액인데 이것은 335백만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매회계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의 총금액이 8,118백만원이다.

이와 같이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에서 재원별 구성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금보험료의 구성비율은 1988년도에 95.9%이었으나, 1990년도에 81.8%로 낮아졌고 1998년에는 67.2%로 대폭 떨어졌다. 반면에 기금운용수익금의 구성비율은 1988년에는 3.8%로 낮았으나 1990년도에 18.1%로 대폭 상승하였고 1998년에는 32.7%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그 기금의 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¹⁵⁾

국민연금기금은 매년 기금운용지침을 근거로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 복지, 그리고 금융부문으로 구분하여 투자된다. 연금제도 도입시에는 신규조성자금에 대한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투자비율이 대략 50 : 50 정도였으나, 1994년

15) 오근식,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 15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의 운용비중이 점점 커져 1998년 12월 말 현재 공공부문이 71.07%(26조7,950억원), 금융부문에 24.48%(9조2,310억원), 그리고 복지부문에 4.45%(1조6,785억원)가 투자되었다.(<표 2-3>참조)

<표2-3> 부문별 기금배분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계	37,704,653	26,795,096 (71.07)	1,678,506 (4.45)	9,231,051 (24.48)
'88	527,920	288,017 (54.60)	-	239,903 (45.40)
'89	705,338	339,783 (48.20)	-	365,555 (51.80)
'90	965,434	390,000 (40.40)	-	575,434 (59.60)
'91	1,128,822	500,000 (44.30)	120,000 (10.60)	508,822 (45.10)
'92	1,422,834	610,000 (42.90)	120,000 (8.40)	692,834 (48.70)
'93	2,981,413	952,200 (31.94)	270,000 (9.05)	1,759,213 (59.01)
'94	3,863,963	3,471,987 (89.86)	212,867 (5.51)	179,109 (4.63)
'95	4,599,649	3,883,500 (84.43)	147,317 (3.20)	568,832 (12.37)
'96	5,715,572	4,239,742 (74.18)	64,354 (1.12)	1,411,476 (24.70)
'97	6,611,467	4,390,000 (66.40)	110,656 (1.67)	2,110,811 (31.93)
'98	9,182,241	7,729,867 (84.18)	633,312 (6.90)	819,062 (8.92)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88~1998.

이중 공공부문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전액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되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시행된 1994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중소기업지원, 농어촌지원 및 보건복지분야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문은 1991년부터 신규조성자금의 10%를 복지부문에 투자기로 계획하여 근로자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매입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휴양단지인 국민연금복지타운자금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7년부터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생활안정 자금대여(전세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학자금, 경조사비)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제도 시행초기에는 채권,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주로 채권관련 상품 위주로 운용하였으나, 금리자유화 시행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1990년부터는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는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본격적인 주식투자를 실시하고 있다.¹⁶⁾

현행 제도하에서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에 관한 정책결정 및 지도·감독기능을 관장하고 있으며,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배분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22조는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사업 중 가입자의 자격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지급, 복지사업 운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법 제 83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타업

16)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0년사」, p. 342.

무가 당연 위임되는 것과는 구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관리운용위탁규정」을 제정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방침을 공단에 시달하였는데, 동 규정에 의거하여 공단에 위탁한 업무는 ① 금융부문에 의한 기금 증식업무 ② 공공부문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에 관한 업무 ③ 기금에 의한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업무 ④ 기금의 회계 및 계리에 관한 업무 ⑤ 기금의 결산서 작성에 관한 업무 등이다.¹⁷⁾

2) 基金運用 制度改善

(1) 공공부문 투자 개선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이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금의 공공부문 예탁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재정규모가 방대함에 따른 일반적인 관심과 함께, 적립기금의 관리·운용 여하가 장래 연금 수급권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예탁은 1993년까지는 신규 조성자금의 50% 수준이었으나 199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시행으로 예탁규모가 증가하였다.¹⁸⁾

그 동안 지적되었던 기금운용의 투명성 미흡과 공공성위주 운용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기금손실 문제는 기금전액을 금융부문에 운용

17) 전계서, 「국민연금 10년사」, pp. 343-344.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1998. P. 4.

했을 경우를 가정해 공공부문 예탁이자율과 금융부문 운용수익률의 차이를 손실이라고 표현한 가상손실이다. 기금은 규모가 방대하고 자금의 공공적 성격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액을 금융부문에 운용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그렇게 운용했다 하더라도 자금의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므로 그만큼 수익률이 내려갔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예탁된 기금은 민간자금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 전체적인 경제성장, 구조경쟁력 향상, 각종사업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는 수익률 몇 퍼센트로는 측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막대한 연금기금을 전액 금융부문에 운용했을 때 투자위험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복합적 요인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히 이자율 차이만으로 기회손실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자율이 금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회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 '98년부터 예탁이자를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의 평균금리로 지급하고, 그 이자가 금융부문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해 1/4분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예탁하여 기금에 기회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표 2-4 참조>)

'99. 1월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의 공공자금 의무예탁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의무예탁 규정을 2001년부터는 완전 폐지토록 하였다. 그 이후로는 공공부문에 투자할 때는 국채를 매입하게 되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환금성 및 상환 보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¹⁹⁾

19)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년 국정감사 (내부자료).

<표 2-4> 국민연금기금 부문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88	1990	1994	1995	1996	1997.9
계	11.98	12.55	12.10	12.11	10.75	10.69
공 공 부 문	11.0	11.0	10.25	11.64	10.30	10.33
금 융 부 문	12.95	13.83	13.91	13.11	11.86	11.78
복 지 부 문	-	-	10.94	10.68	9.69	8.74
공공·금융차이	△1.95	△2.83	△3.66	△1.47	△1.56	△1.45

(2) 기금운용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

기금운용위원회와 관련하여 최근 기금운용위원수를 15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과반수를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여 대표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기금운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문 등에 공시하며 위원회의 회의 결과도 완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 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시 가입자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체제이며 투명성을 확보한 것은 운용의 질을 한 단계 높인 성과라 판단된다.²⁰⁾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이 많아 위원회 운용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회의의 운영을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불출석위원에게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운영규정을 법제화 하였다.

또한, 경제·금융 등 전문분야 박사급으로 구성된 실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20)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기금의 장기관리·운용조직 방안」, 1999, P. 138.

기금운용결과의 성과평가와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안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들이 기금운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마련

① 저부담, 고급여 구조 개선

연금제도 도입당시 제도의 조기정착과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연금을 설계하여 구조적인 재정불안정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지나친 수급불균형 구조는 장기적 재정악화의 요인이 된다.²¹⁾

연금재정 안정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실시한 여러 나라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보다 보험료율을 훨씬 높게 책정한 나라에서도 인구의 고령화와 조기퇴직 경향으로 연금급여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을 점차 조정해가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 급여 수준의 증가억제 등의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2-5>참조)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여수급율을 종전 40년 가입시 임금대체율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 연령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높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② 재정계산제도 도입

‘97년 7월 각계전문가와 정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21) 전계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P. 6.

<표 2-5> 주요국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

	한 국	일 본	독 일	스 웨 덴	미 국
연금보험료(%)	9.0	17.35	20.3	19.33	12.3
연금급여수준(%)	70	69	70	60	40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	65세	65세	65세	65세

발족하였는데, 여기에서 제안된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1998년 개정국민연금법에서는 매 5년마다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²²⁾

(4) 기금운용조직의 혁신

IMF경제위기 이후 급변하는 금융·경제환경에 적그 대응하고, 2001년 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예탁제도가 폐지되어 자체운용규모가 증대되므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자본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투자기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투자전략기능, 기금자산의 건정성과 안전한 수익확보를 관리하는 위험관리기능, 유망 투자대상과 경제여건 등을 조사·연구하는 조사분석기능 등을 대폭 강화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22) 전계서, 2000년 국정감사(내부자료).

커지고 있어, 이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전문투자운용조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 평가를 통해 잘한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기금의 전문적 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²³⁾

3. 國民年金基金 福祉投資事業의 意義 및 管理

1) 복지투자사업의 정의와 범위

국민연금 복지사업은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표 2-6>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를 포함한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복지사업은 대부분 공공성과 복지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준수익성사업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기금의 운용사업등) 제2항과 제3항에서 운용수익률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해 법정이자율 이하의 수익률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연금회관확보사업은 순수한 일반자산취득으로 본다면 국민연금법상의 복지사업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관내에 각종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하므로써 복지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실시가능한 구체적인 복지사업들을 <표 2-7>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⁴⁾

23) <http://www.mohw.go.kr>

24) 전게서, 「국민연금 10년사」, pp. 374-375.

<표 2-6> 국민연금법 관련조문

관 련 조 문	내 용
법 제1조(목적)	-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의 기여
법 제2조 (공단의 설립)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동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설립
법 제23조 제4항 (복지사업)	-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 증진 사업
법 제42조 (복지사업)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기타 복지사업
법 제83조 (기금의 관리운용)	-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복지증진 사업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령 제 28조 제1항(복지사업)	-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 병원·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대여 -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학자금의 대여 - 당연적용사업장인 중소기업장내의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2) 복지투자사업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감소되어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또한 인구구조는 선진국에 가깝게 변모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이 노령인구는 1997년 현재 6.3%로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노령화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1999년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경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7> 복지사업의 분류

구 분	대 부 사 업		시설사업
	가입자(사업자) 복지 대부사업	사회복지시설 설치자금 대부사업	공단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복지사업 수혜대상	가입자 및 수급권자	불특정 다수의 국민	가입자·수급권자 및 일반국민
복지사업 시행주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용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학자금의 대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여 -당연적용사업장인 중소기업장의 사업장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대여 -병원·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등을 위한 시 설의 설치 및 운영 -병원·휴양시설 또 는 요양시설 및 운 영
각 사업의 정 의	가입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생애주 기(life-cycle)에 의거하여 자금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메워주기 위한 것으 로 직·간접(사업주를 통한) 대부사 업과 함께 사업장내 복지시설의 설 치 및 운영자금의 융자사업도 포함. 이때 사업장이란 국민연금 당연적 용사업장을 의미하며 사업장내 복 지시설자금의 대여사업 대상은 중 소기업사업장으로 제한	이 사업은 공공성을 강 하게 띄고 있으므로 넓 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설치에 대한 대 부사업이라고 할 수 있 음	복지수혜대상이 국 민연금가입 및 수급 권자 뿐만이 아니라 국민전체에게 복지 시설 이용권을 줄 수 있음

자료)한국산업경제연구원, 「국민연금 복지타운 건립의 사업효율성 제고방안 연구」,1997,

한편 그 동안의 고도성장으로 우리의 경제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1996년에는 소위 선진국의 사교클럽이라고 불리워지는 OECD에도 가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화, 개방화 정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²⁵⁾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에 근접하는 양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면에서는 그 범위 및 수준에 있어 발전정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편의 향상, 노인층 확대, 핵가족화 등에 의한 국민 복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의 IMF사태로 요약되는 경제 불황의 여파에 따라 정부의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조정될 것이 예견되어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에 정부의 부족한 복지사업을 보완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 및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연금기금에 의한 복지사업을 계획 실시하고 있다.²⁶⁾

3) 복지투자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실물투자는 현재 회관확보와 종합휴양시설사업으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복지성이 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국민연금의 실물투자는 복지실물투자라고 그 성격을 요약할 수 있다. 복지실물투자사업추진의 초기부터 대체적으로

25) 최일섭, "OECD 가입과 한국사회복지", 「OECD 가입과 한국의 복지대책」, 국민복지추진연합, 1997, p. 13.

26)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0년사」, p. 372.

제시되어 온 목적 또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연금기금은 가입자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써 그 기금의 복지부문 투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즉, 복지투자사업을 통하여 설치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환원용자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친밀감과 이미지제고로 제도발전에 기여한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여 노후가 되어서야 연금수급을 하게 되므로 보험료납입의 주계층인 젊은 근로자층은 특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제도에 대한 친밀성과 필요성을 보다 더 느낄 수 있어 제도의 이미지제고와 존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연금기금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현재 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및 복지사업부문으로 나뉘어 투자되고 있다. 휴양시설이나 연금회관 설치 등 실물에 투자하게 되는 복지투자사업은 기금투자를 다양하게 분산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운영에 기여케 한다. 경기의 불황이나 인플레이션 발생시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 폭락으로 적립기금의 가치를 위축시키는 경우 연금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물투자를 통한 복지사업은 화폐가치의 하락에도 실질가치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²⁸⁾

넷째, 경제사회안정화에 기여한다. 공공기금인 연금기금의 시설설치 등을 통한

27) 김성숙 외, 「국민연금 실물투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p. 4.

28) 전계서, 「국민연금 10년사」, p. 373.

직접실물투자는 시설의 건립,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므로써 최근과 같이 민간의 투자가 극히 위축되어 고실업이 발생하는 사태에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안정에 이바지하게 된다.

다섯째,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는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투자는 복지부문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다.

4) 복지투자사업의 관리·운영

복지부문에의 투자는 1991년 강남회관과 충북회관 등의 국민연금회관사업을 시초로 1994년 보육시설 설치자금 대여, 1995년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대여, 1997년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994년 부지가 매입되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복지타운(건립)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1991년부터 주택기금채권매입이 복지부문의 기금으로 산입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연금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공공사업을 위한 투자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²⁹⁾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공공사업부문, 금융사업부문, 복지사업부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사업의 영역은 <표 2-8>과 같으며, 복지부문의 유형별 투자현황은 <표 2-9>와 같다.

29) 전계서, 「국민연금 10년사」, p. 376.

<표 2-8> 기금운용 현황(2000. 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계	공공사업부문	금융사업부문	복지사업부문
총누계 금액	468,639	323,672	151,786	9,181
구 성 비	100.00	66.8	31.3	1.9

자료)주식회사 씨드50, 「국민연금 복지시설사업 평가 및 방향설정에 관한연구」 p.16.

<표 2-9> 복지부문 투자현황(2000. 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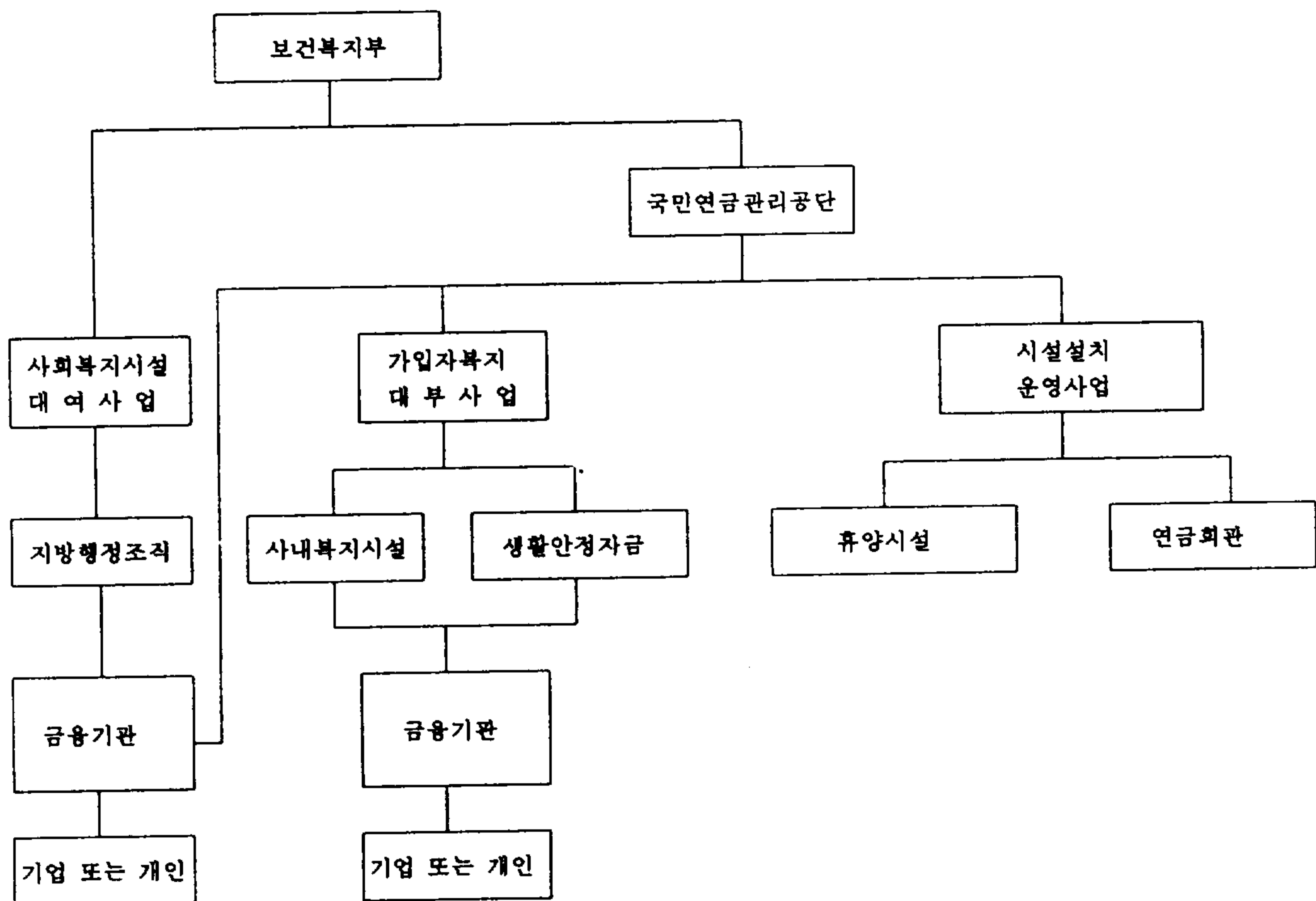
구			분	시행개시연도	복지실적 누계
복지용자 사 업	복지시설 설치자금대여	보육시설설치자금대여		'94	5,183
		노인복지시설설치자금대여		'95	689
	생활안정자금대부			'97	591
	생계자금대부				2,084
복지시설 사 업	복지휴양시설사업			'95	634
	국민연금회관사업			'91	1,743
복지부문합계					9,181
합 계					10,924

자료) 주식회사 씨드50, 상계서, p. 17.

※복지부문의 투자는 복지용자사업과 복지시설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복지시설 사업은 복지용자사업에 비해 투자액이 적음

현재 복지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는 <그림 2-1>과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복지사업 중 대규모 휴양단지 설치업무와 연금회관사업은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및 노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 설치자금 대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³⁰⁾

<그림 2-1> 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3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0년사」, pp. 377-378.

4. 福祉投資事業에서의 年金會館 活性化를 위한 分析模型

복지투자사업은 국민연금기금으로 가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금기금에서 투자되는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이란 용어가 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복지사업이란 용어도 병행해서 쓴다.³¹⁾

연금기금에 의한 복지사업에 대하여 연금 가입자가 원하거나 연금기금으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연금기금은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적립되며 그것은 안정되게, 적당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복지투자사업은 이러한 제한안에서 시행될 수 있다. 또한 연금기금으로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대신해주는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복지수행자가 행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게 하거나 역할이 중복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사업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³²⁾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도 다원화되는 현 사회에서 연금기금의 운용에 무리가 없고 가입자의 합의가 있다면 일정 한도내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실시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³³⁾

국민연금회관은 연금업무의 안정성과 능률성의 제고, 실물투자에 의한 연금기금의

31) 장인협 외, 「사회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 360.

32) 김성숙, 「국민연금 가입자 복지투자욕구에 관한 조사보고서」, 1996, p. 3.

33) 최일섭, 21세기 한국 복지사회로의 도전,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자료집」,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p. 12.

안정성에의 기여, 국민복지증진, 국민연금의 홍보효과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회관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금모형에 단계적으로 접근시키는 사업계획과 추진,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석요소를 법적, 제도적 차원과 시설관리 운영으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적, 제도적 차원

현재 국민연금회관의 건물규모는 10층이하, 연면적 5,000평이하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나 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연금회관의 확장과 관련하여 재건축 등과 같은 기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회관부지 매입, 회관설계, 건립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욕구평가와 주변여건을 참조하여 계획·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다 융통성을 갖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후생복지서비스 강화에 따른 회관 건축시, 지방 건축 조례의 설치 조항의 융통성있는 적용 내지는 조례의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다.

연금회관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립되므로 회관건립, 시설사업, 프로그램개발 등 제반사항에 있어 회관사업 준비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이용대상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욕구를 사전분석하여 적절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요구되므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회관 사업목표를 확실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전개시켜야 한다.³⁴⁾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은 연금회관의 사무실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이뤄나가야 한다.

2) 시설관리운영 차원

연금회관운영의 시설운영에 있어 수익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요가 높은 사업을 실시하되, 복지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즉, 수익사업을 통해 오는 이득을 복지서비스에 투자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운영비결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임대 또는 수수료 할당제 방식의 시설운영의 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연금회관사업은 계획과 추진은 복지사업팀이 시설의 전반적 운영은 총무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증가될 경우 기존인력으로서 관리체계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담당하는 회관사업운영실의 신설이 요구된다.

3) 종합 및 제언

위에서 설명한 법적, 제도적 차원과 시설관리 운영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모형은 <그림 2-2>와 같다.

국민의 복지수준 증가와 복지욕구의 표출로 거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기금의 일부를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연금회관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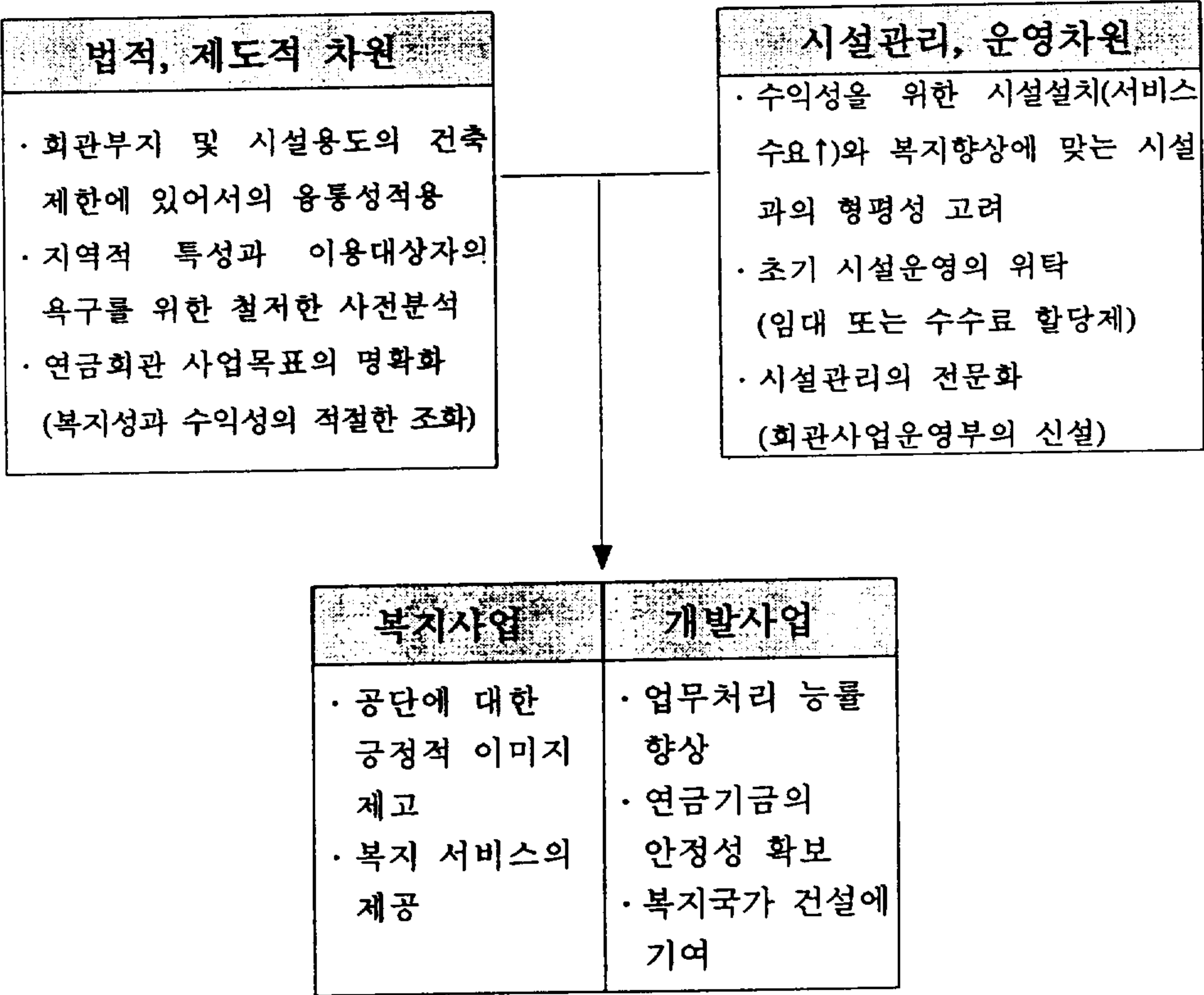
34)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 481.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 복지후생시설의 서비스 다양화와 편의를 제공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보다 높은 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투자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설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능력이 요구된다.

연금회관의 효율적인 수익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복지사업의 적극적 시도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력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림 2-2> 연금회관 분석모형



III. 國民年金會館運營의 現況

1. 國民年金會館 事業의 意義

1) 國民연금회관 확보의 근거

國民연금회관 확보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추진지시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 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³⁵⁾ 연금회관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관련된 제반 사무처리공간확보를 위하여 계획되어 왔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보건복지부 문서번호 保社基金 31500-11913 ('91.8.23 ; 「회관확보 기본계획 추진」) 및 保社基金 31500-53 ('92.2.6 ; 「복지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산관리 철저」)의 지침이라 할 수 있다.³⁶⁾

(1) 保社基金 31500-11913의 주요내용

① 연금회관의 규모

연금회관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나누며, 건물면적은 지역실정과 부지규모 및 활동계획에 따라 추후 조정한다. 세가지 형태는 <표 3-1>과 같으며 주로 지역크기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

② 사업추진방법과 계획

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지역공영개발사업단 등 공공기관을 통해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은 신축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추진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행하며 연금회관은 사무실활용 외에 임대 및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35) 김성숙 외, 「국민연금 실물투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p. 48.

36) 이용하 외, 전게서, p. 166.

운용 등으로 수익사업을 도모한다. 구체적 사업계획은 공단에 설치할 복지사업 실시준비단에서 수립한다.

<표 3-1> 연금회관 규모지침

(단위 : 평)		
구 분	대 지	건 물
A형 (본 부)	2,000	10,000
B형 (직할시지부)	1,000	3,000
C형 (도지부)	500 ~ 1,000	2,000 ~ 3,000

(2) 保社基金 31500-53 의 주요내용

① 사업추진방향

지역별 연금회관을 건립하고 원칙적으로 공단사무실 및 가입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연금후생회관으로 운영한다. 연금회관에는 연금매장, 예식장, 가입자교육장, 교양문화시설 및 체력시설 등을 설치한다.

② 복지사업 실시준비단과 자문위원회 구성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사업 실시준비단을 구성하고 복지사업기획팀, 연금회관사업팀 및 재정운용팀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준비단의 기능은 복지사업 추진계획수립과, 연금회관 취득 및 활용 계획,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복지사업 분야별 장기적, 종합적 손익분석 및 복지사업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며 복지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으로 한다.

③ 자산 관리·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표 3-2> 회관관리운영상 문제점

회관활용기본계획 의 미비	· 회관활용 기본계획 미비상태에서 회관 매입 · 현재 회관은 주로 공단 사무실로 사용, 일부분만 임대 · 복지사업 실시기반 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한 회관의 가입자복지 활용방안 미비
각종 세제 검토와 수익성 검토 소홀	· 수익사업관련 각종세제 검토 미흡(임대에 따른 각종 세제, 부동산등기 및 건축조건 등) · 수익사업실시 계획수립 및 검토 소홀
회관 관리운영비 지출 미구비	· 임대수입(임대보증금 이자, 임대료 및 관리비)을 회관 전체관리운영비로 지출

<표 3-3> 연금회관관리운영 개선방안

회관의 가입자 복지 활용	· 향후 회관매입시 회관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필요 · 현 사용 건물중 일부 가입자복지 활용방안 강구
관련세제 검토 및 대책 강구	· 수익사업(임대 등) 수행 및 건물신축 등 제반 세제검토, 실시근거 및 보완책 마련 · 적용상 이견이 있는 각종 세제에 대한 검토 및 세법개정 요청 등 대책 수립
자산의 구분 계리·관리 및 관리운영비 지 출 구분	·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일반회계와 별도 구분계리·관리하고 년도말 결산시 기금에 편입되도록 조치 ·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운영비에만 충당하고 공단사용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일반예산으로 충당
수익사업계획 수립 및 세제 공과금 지출구 분	· 사무실 임대 등 수익사업계획 수립시 관련세제 및 사업수행에 따른 철저한 수지계산으로 기금손실 방지 · 수익사업 수행에 따라 부득이 발생하는 세제공과금 중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거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자본지출만 기금사용 가능

2) 연금회관의 필요성과 기능

연금회관은 연금업무의 안정성과 능률성의 제고, 실물투자에 의한 연금기금의 안정성에의 기여, 국민 복지증진, 국민연금의 홍보효과 등의 기능을 하며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회관의 확보가 필요하다.³⁷⁾

국민연금회관 확보의 목적은 첫째, 회관내 시설에서 수행되는 연금관련업무와 대민서비스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임대회관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회관을 확보함으로써 사무실 임차료 절감 및 사무실 임대료 추이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무실의 빈번한 이전에서 초래되는 업무 불안정문제가 해결되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 제고로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률을 높일 수 있다.³⁸⁾

둘째, 연금회관의 자체건물 확보에 의한 실물투자는 실물의 실질가치 증대에서 오는 이득을 꾀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취득에 의해 얼마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축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손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으므로 연금기금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연금회관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타연금제도나 각종 공제회에서 건립한 자체회관, 그리고 일본의 후생연금회관 등과 마찬가지로 연금가입자나 수급권자에게 유용한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37) 이용하 외, 전게서, p. 163.

38) 코오롱씨드50(주), 「국민연금회관 사업방향 연구」, 1997, p. 2.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고 동시에 자율적 운용이 허용된다면 정부보다는 융통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연금의 주가입자인 근로자계층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고,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증대로 아동에 대한 탁아 등의 복지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부족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보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넷째,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어 이제 시행 12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연금은 다른 주요 공적보험인 의료보험과 달리 실질적으로 수혜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매우 길므로 연금이 본격적으로 수급되기 이전에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이의 의의나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 있어서 가입자에게 필요한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연금회관사업을 통해 제공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³⁹⁾

다섯째, 연금회관내에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후생시설(예 : 체육·문화시설, 교양·집회시설, 판매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연금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와같은 효과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도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⁴⁰⁾

39) 이용하 외,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국민연금연구센터, p. 165.

4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0년사」, p. 380.

2. 國民年金會館事業 現況

1) 전체회관 현황

<표 3-4> 전체회관 현황

(단위 : 평, 억원)

구 분	회관명	위 치	층 수	대지규모	연면적	사업비 규모	비 고
운영중	본 부	송파구 신천동 7-16	7F / 1B	2,623	3,714	507	
	강 남	강남구 논현동 4-15	10F / 3B	782	4,637	395	
	경 남	창원시 신월동 101-1	5F / 2B	918	2,581	88	
	광 주	광산구 우산동 1582-4	7F / 3B	625	3,071	132	
	대 전	서구 탄방동 608	5F / 2B	697	2,762	118	
	대 구	달서구 이곡동 1198-5	6F / 2B	906	3,081	170	
	전 북	완산구 서신동 769	6F / 2B	1,210	3,025	157	
	인 천	남동구 구월동 1462-1	5F / 3B	845	3,014	176	
공사중	충 북	청주시 서문동	6F / 2B	582	2,612	토지36 건물150	2002.1 준공예정
공사중	부 산	연제구 연산동	22F / 4B	1,460	13,284	토지198 건물623	2004.4 준공예정

주 : 2000년 5월 기준

사업비규모는 취득가액을 기준(공단 내부자료를 기준으로 함)

2) 운영중인 회관

(1) 본부회관

① 입지분석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매입재원 512억원을 확보하여 회관을 매입하였다. 현재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의 경우 지하철 2호선, 5호선, 8호선 잠실역 역세권 내에 위치하나 주변의 고층건물 입지로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로 1985년 4월 1일에 준공된 것으로 지상7층 지하1층 규모이다.⁴¹⁾

② 이용현황 분석

본부회관은 사무실, 전산실, 강당, 구내식당 및 어린이집(보육시설) 등의 용도로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1층 81평은 금융기관에 임대하고 있다.⁴²⁾

(2) 강남회관

① 입지분석

1990년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500억원을 배정 받아 1991년 5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평리빌딩을 매입함으로써 확보되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역세권에 위치,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며 최근 전철역 주변에 신규 오피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오피스 유치 경쟁은 치열하다.

② 이용현황 분석

기존 영화관의 출점으로 현재 공실상태로 현재의 영화관을 용도변경하여 사

41) 주식회사 씨드50, 「국민연금 복지시설사업 평가 및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2000.
p. 105.

42) 전계서, 「국민연금 10년사」, p. 381.

무실형태로 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다한 취득비에 비해 임대효율성은 떨어지며 지상 1,2층은 제일은행이 임대하였고 2층~9층은 환경관리공단이 입주한 상태이다.⁴³⁾

(3) 경남회관

① 입지분석

경남회관은 회관확보 기본계획에 따라 공단이 직접 창원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를 공모하고 신축을 추진한 최초의 회관으로, 1992년 4월에 착공하여 1993년 10월에 완공하였다. 동 회관은 경남 창원시 신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이다.⁴⁴⁾

창원시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계공업을 중심으로한 공업도시 및 경상남도를 총괄하는 행정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도시의 자족성이 크다. 창원시의 중심가는 창원시청을 중심으로한 중앙로변에 형성되어 있으며 창원시청~경남도청간은 공공행정업무 지구가, 창원시청 이남지역은 상업 및 일반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경남회관은 창원시청에서 경남도청간에 형성된 공공행정 업무지구에 입지하고 있어 상업중심지라 할 수 있는 창원시청로타리 이남지역과는 지역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② 이용현황 분석

경남무역(전시장), 경남개발연구원, 경남케이블TV 등 공공성이 강한 업체 및 태영기술단 등 민간 또는 개인의 소규모 임차인이 입주하고, 직접 사용분을

43) 주식회사 씨드50, 전게서, p. 86.

44) 전게서, 「국민연금 10년사」, p. 382.

제외한 임대부분은 공실없이 이용되고 있다.

비 수익저 부대시설이라 할 수 있는 회의실은 주요 회의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예식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회의실 외에 비 수익적 부대 복리시설은 없이 건물의 활용도가 높다. 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고 공단지체 사용분 확보 및 주요행정기관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임대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⁴⁵⁾

③ 사업평가

<표 3-5> 경남회관 사업평가

안정성 확보	· 경남회관의 입지여건 및 건물규모상 현 회관사업여건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임대시장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 사업수행 가능할 것으로 평가 · 임대수익율은 높지 않지만 공실 없이 안정적 사업 영위시 기본적인 사업성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평가 · 토지투자비가 타 지방회관 대비 절감되어 상대적인 사업성 양호
미래여건 감안	· 창원시의 도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경우 주요개발축은 시청 남쪽의 상업/업무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경남회관은 향후 창원시의 변화 양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와 큰 차이 없는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검토의견	· 공공시설 보호지구로서 고층개발이 억제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운영효율상 적절한 것으로 평가 · 건립단계에서 공공행정타운이라는 삭막한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도입을 규모 중대와 연계 - 기존 회의실과 결합하여 유동인구의 흡입효과 발생 기대 - 건립초기단계에서 복지시설 수용 가능한 추가 규모 계획할 경우 부지의 이용효율 증가 효과 있었을 것임 - 기존 회관 규모는 부지규모에 비해 적은 편임

45) 코오롱씨드 50(주), 전게서, p. 7.

(4) 광주회관

① 입지분석

광주회관은 1992년 12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1993년 12월에 착공해 1996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다. 경남회관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신축한 본 회관은 지상 7층, 지하3층 규모이다.⁴⁶⁾ 하남지구의 중심상업용지로서 동서 및 남북방향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요지에 입지하고, 입지적 장·단점은 <표 3-6>와 같다.

<표 3-6> 광주회관 입지적 장·단점

장	점	단	점
· 양호한 교통접근성		· 광주도심에서 이격 및 교통접근성 불리	
· 회관건물의 인지도 양호		· 본격적 개발완료까지 장기간 소요예상	
· 주변지역에 인지도 높은 업무시설 다수			

② 이용현황 분석

굿모닝증권(1층), 광주식품의약청(6, 7층) 등이 임대되었고, 3층은 휴육실 및 지하 1층 슈퍼마켓은 공실이다. 공단은 지상 4, 5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은 강당, 2층은 어린이집 및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다.⁴⁷⁾ 상권 미형성으로 임대문제가 곤란하며, 휴육장 3층 입지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

광주회관의 임대료 수준은 광주도심지역의 1/4 수준이며 광주회관의 평당 건축비(319만원) 대비 기준층 임대료는 30% 수준이다.

③ 사업평가

46) 전계서, 「국민연금 10년사」, p. 382.

47) 주식회사 씨드50, 전계서, p. 92.

<표 3-7> 광주회관 사업평가

장기적 안목	· 회관 주변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및 배후지역 규모, 향후 도시계획 등을 감안할 때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 하남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회관사업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 회관 사업 평가는 상무신도시가 개발 완료되고 하남공단 등 공업단지와 연계되는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는 시점에서 정확히 평가 될 것임
용도문제	· 광주회관은 저층부는 복리시설, 상층부는 업무시설로 구분된다. · 저층부의 복리시설 배치는 상층부 업무시설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역 효과 발생 · 가장 사업성이 양호한 저층부를 수익성이 낮은 복리시설로 구성하여 회관 전체적인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 건물의 중앙부인 3층에 휴육실을 배치한 것은 위층의 업무시설, 2층의 식당,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용도 및 이용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구상으로 평가된다. · 지하층의 슈퍼마켓과 지상층의 휴육실은 이용수요 및 주변 대형할인매장과 같은 경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구상이다.
검토의견	· 임대 실현성이 낮은 지하층을 복리시설로 용도변경 및 저층부의 복리시설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용도변경 작업이 요구

(5) 대전회관

① 입지분석

대전회관은 1994년 5월에 착공하여 1996년 5월에 완공한 건물로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이다.⁴⁸⁾

대전회관이 위치한 준주거지역은 대전회관외에 규모있게 개발된 건물이 없으며, 인근 준주거지역 일부가 5층내외의 근린형 시설로 개발되었다. 회관은 대전도

48)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0년사」, p. 383.

심과 유성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인 계룡로(50M)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및 인지도 매우 양호하며 대전회관이 위치한 준주거지역은 둔산지구의 외곽부에 해당된다.

② 이용현황 분석

지상층은 공단지체사용 및 외부임대로 전층사용중이며 지상1층은 단기임대 매장으로 지하층은 사우나로 임대중이다. 둔산지역은 건물의 신규성 및 고급성으로 신규오피스 소요창출 및 이전수요 확보로 오피스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적으로 주요 간선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인근의 상업지역이 우선적으로 공실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백화점, 한화백화점, 까르푸, 뉴코아,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둔산지역에 진출하고 있어 둔산지역의 중심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식당 및 강당이 2층에 위치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⁴⁹⁾

③ 사업평가

<표 3-8> 대전회관 사업평가

적정개발	· 회관의 입지여건 및 부지규모를 감안, 연금회관으로서 개발 적정성 확보 · 향후 발전잠재력 높은 둔산지역으로 양호한 교통여건의 부지로 평가
용도문제	· 주변 준주거지역의 개발 및 둔산 중심상업지역에 개발되는 시설을 감안할 때 회관의 규모 및 계획용도의 경쟁력이 낮음 · 1층은 금융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은행 및 제2금융권이 자체 사옥을 둔산지역에 확보하고 있고, 주변수요 및 건물 규모상 금융권 유치가 어렵다. · 1층부는 전시판매장 유치 가능성 있으며, 주변 근린시설의 개발형태를 감안할 때 전문식당을 유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

49) 주식회사씨드 50, 전세서, p. 95.

검토의견	· 회관의 입지여건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 가급적 공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향후 임대료 상승 및 빌딩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둔산지역 개발특성상 개발이 완료되기 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둔산지역 개발 성숙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사업전략이 요구된다.
------	--

(6) 대구회관

① 입지분석

대구회관은 그 동안 회관건립사업에 대한 기술축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1995년 4월에 착공, 1997년 9월에 준공하였다. 동회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이다.⁵⁰⁾

② 이용현황 분석

성서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역과의 근접성 및 주변 상업지역의 향후 개발전망, 성서공단의 잠재력 높은 수요를 감안할 때 회관의 입지성이 매우 양호하다.

신도시내 근린상가 집중지역으로 임대수익성 양호하고 민원실이 2층에 존재로 활용성이 떨어진다.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떨어지며 지하에 목욕탕 경쟁력 떨어진다.

③ 사업평가

50) 전계서, 「국민연금 10년사」, p. 383.

<표 3-9> 대구회관 사업평가

사업성양호	· 임대여건 개선, 적극 임대마케팅실시로 임대완료 · 대구회관의 입징건상 향후 회관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근린지향의 금융, 구청관련된 건축, 설계 사무실, 성서공단관련지원업무 시설 등 양호한 임차수요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규모증대	· 부지규모 및 향후 임대여건을 감안할 때 건물의 규모가 증가되어도 임대사업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간선도로에서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10층 이상의 고층개발이 요구
용도문제	· 인지도가 높은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시설들과 ·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각종 병원이 입주한 상태임

(7) 전북회관

① 입지분석

전북 완산구 서신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이다. 인접부지에 교원공제회 전북회관(지상 14층), 한국통신 전주정보센타(지상 15층) 등 대형 업무시설 위치하고 인근에 E-MART 등 대형유통업체 신축 추진 등으로 상권발전 예상된다. 전주회관은 규모가 큰 인근 교원공제회관 및 한국통신 정보센타 등 업무시설의 집적효과로 기본적인 회관사업여건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② 이용현황 분석

1층 증권사 입주로 2층 임대상황 열악하고 전용을 저하로 임대경쟁력 떨어지며 주변 시설(교원공제회관)에 비해 규모 경쟁력 열악하다. 전주시내 업무시설 수요가 적다.⁵¹⁾

(8) 인천회관

① 입지분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이다. 회관 남측 5km 지점에 남동공업단지(500만평) 및 인천연수지구(180만평)의 배후 도심으로 구월지구의 요충지로 광장 및 공용주차장이 부지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 국철1호선과 연계된 인천도시철도 예술문화회관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역세권에 위치하며 인천시청을 핵으로 지구내 지방경찰청, SK텔레콤 인천사옥, 건설공제협회 등 대형공공시설의 입주가 활발한 일반상업지역과 행정기능이 혼재되었다.

② 사업평가

이면도로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상 중·소규모 오피스임대수요 위주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는 오피스건물과의 경쟁으로 임대 경쟁 예상되며, 인천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임대유치로 공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상권형성중으로 장기전망 양호하나 회관 규모 저하 및 주차문제가 있다.

3) 공사중인 회관

(1) 충북회관

① 입지분석

충북회관은 1980년 2월에 준공되어 교회 건물로 사용되었던 것을 1990년 5월에 매입하였다. 주변에 도청, 경찰서, 각 금융기관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해 있어 민원인의 방문이 편리하다. 현재 이 건물은 일부건물이 1930년에 준공되어

51) 주식회사 씨드50, 전세서, p. 101.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층으로 재건축 중에 있다.⁵²⁾

② 개발방향

행정, 교육·문화도시 및 소비성격의 도시에서 산업 및 관광도시로 변신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주공항 개설 및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의 교통시설확충으로 도시성장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도심지역은 버스터미널 등 도심부적격시설의 도시외곽이전 및 기존도심지역 재정비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추진 중이며 임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수급자를 위한 시설의 고려가 필요하다.⁵³⁾

(2) 부산회관

① 입지분석

부산광역시청 건너편에 위치로 입지환경 양호하고 1997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2004년에 준공예정으로 지상23층, 지하4층 규모이다.

② 개발방향

현재 일부부지는 모델하우스로 임대중이며 향후 업무중심지 개발에 따라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⁵⁴⁾

3. 他公的年金會館 運營實態 및 示唆點

국민연금의 복지시설투자와 유사한 연금기금의 시설투자사업의 예는 일본

52) 전계서, 「국민연금 10년사」, p. 381.

53) (주)씨드 50, 「국민연금 복지시설사업 평가 및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p. 107.

54) 상계서, p. 109.

공적연금의 복지시설사업과 국내 타공적연금의 복지시설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 공적연금기금으로 이러한 직접투자방식의 복지시설사업을 하는 나라의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국내 타공적연금의 복지시설사업의 모델도 일본 공적연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복지시설사업의 모델은 일본 공적연금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국내 타기관과 다음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복지사업의 실시배경, 성격, 현황 등을 살펴 보아 우리 국민연금의 복지시설투자사업과 비교함으로써 국민연금시설투자사업에 갖는 시사점을 얻도록 할 것이다.⁵⁵⁾

1) 국내 타기관회관의 운영 현황

(1) 공무원연금 상록회관

① 회관사업의 배경과 현황

공무원연금이 시행된 것은 1961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공적 연금으로 시설사업은 연금회관, 체육시설, 휴양시설, 연금매장 등이 있는데 직영사업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관이 건립되어 회관사업이 실시된 것은 1988년 이후이다. 공무원연금에서 건립 또는 건립추진중인 회관은 1999년 현재 5개소이며 부지확보 또는 신축중인 3곳이 있다.⁵⁶⁾

공무원연금 상록회관 중 서울회관은 지하3층, 지상 17층이며, 부산회관은 지하 4층, 지상15층으로 비교적 고층이나 제주는 지하 3층, 지상 5층, 광주는 지하 2층,

55) 김성숙 외, 전게서, p. 14.

56) 상게서, p. 28.

지상 5층으로 저층이다. 그러나 광주회관은 대지가 넓게 확보되어 있어 건축면적은 가장 넓다.

공무원연금의 상록회관 건립에 있어서 건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필요한 시설종류, 시설이용자수, 사무실면적, 그 지역의 건축조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에서 대지와 건축면적을 결정한다.

상록회관은 초기계획대로 다양한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은 광주회관에만 일부 설치되어 있다. 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일본의 후생연금회관에 설치된 시설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역마다의 독특한 욕구에 따른 시설의 배치라기 보다는 일정한 기본안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민간기관과 달리 관리의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공적조직의 경직성 및 획일성과 무관하지 않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관리 및 오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에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며 높은 이용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의 설치에 가입자의 수요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의사결정에 상급 지휘자의 의사가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과 같이 권위주의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적절한 시설설치가 어렵게 되는 면이 있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그 가능성이 커진다.

② 수용시설의 운용방식

상록회관의 시설 중 식당, 커피숍, 스넥코너, 미용실, 꽃가게, 은행, 우체국은 임대운영을 하며, 그 외 판매시설, 체육시설, 테니스장, 예식장, 문화시설 및 홍보전시관, 주차시설은 직영을 하고 있다. 사무실은 관리공단에서 쓰는 것 외에

일부는 임대한다. 특이한 것은 퇴직공무원의 휴식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퇴직공무원의 휴게실을 설치한 것이다.

운영방식의 채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임대 : 직원관리가 어렵거나 경영비결을 잘 알지 못하는 등으로 공익기관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하거나 일처리가 복잡함에도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업종
- 직영 : 시설이용자가 많고, 경영비결을 알며 공단에서 직접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③ 수익성

공무원연금은 최근까지 공단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공무원의 시설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공단사업은 그동안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차익금의 계산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사업자체에서 적자만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문제시되면서 앞으로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실물자산의 가치상승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⁵⁷⁾

수익성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회관사업 중에는 예식장사업의 수익성이 가장 높다. 수영장사업은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수익성도 높은 편이다. 판매시설은 현재 상품관리, 판매촉진, 제고관리 등을 모두 물품공급처에서 하고 있으므로 중간비용이 많이 들어 이윤이 낮다. 따라서 앞으로는 직접 물품을 발주조달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사무실임대업은 이용시설에 비해 수익성이 낮지만 관리가 수월하고 수익성에 대한 위험부담이 별로 없다는 잇점이 있다.⁵⁸⁾

57) <http://www.mogaha.go.kr>

(2) 향군회관

① 회관사업의 배경과 현황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에서 건립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1개소가 있다. 재향군인회는 각 시, 도, 군단위에 지회가 있으며 모든 퇴역군인이 회원이 되므로 현재 회원수는 500만여명에 달한다. 재향군인회는 연회비, 종신회비로 구별되는 향군회비와, 중앙고속, 향우경비, 향우용역, 향우개발 등 자체산하업체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운영된다. 향군회관의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은 주로 향군회비 80억원으로 충당되었으며, 1988년 2월 향군회관 본관이 그리고 1992년 6월에 별관이 준공되었다.

향군회관의 시설사업은 사무실을 제외하면 대체로 예식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본관과 별관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예식사업과 관련된 예식장, 사진관, 식당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커피숍, 미장원, 이발소 등이 모두 예식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그에 비해 체력시설이나 판매시설은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예식사업가 관련된 시설의 집중은 수익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시설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시설임가이용 및 사업수익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

② 시설사업 운영방식

향군회관 시설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직영 : 회관사업 및 제조업체본부사무실, 재향군인회 본부사무실, 회원휴게실, 강당 등 직접사용부분, 수영장, 직매장
- 임대 : 예식장, 피로연 식당, 기타식당, 스넥코너, 미장원, 이발소, 여성복판

58) 이용하 외,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국민연금연구센터, pp. 218-219.

매장, 커피숍, 약국, 치과, 양복점, 은행, 사우나, 사무실

- 위탁 : 직원 구내식당

시설의 운영방식은 임대와 직영으로 구분한 것은 운영요령상 결정된 것이다. 별관수영장은 수익성이 높으며, 수영장은 운영비결을 알아야 하므로 시설설치시 반드시 유경험자를 운영에 관여시켜야 하고 회원강습제를 도입하여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직매장은 이용고객이 한정되어 있으며 수익성이 높지 않지만 지역주민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통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으며 제품관리는 물품납입업체가 담당한다.

커피숍, 식당, 사우나시설은 임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종업원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며, 직원을 위한 구내식당도 주방장에 대한 금전관리상의 통제가 어려우므로 위탁관리하고 있다.

③ 수익성

향군회관의 경우 수익성의 순위로 본다면 예식장, 수영장, 판매시설임대, 사무실임대, 직매장의 순이다. 향군회관의 모든시설은 회원들의 후생복지와 수익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

향군회관의 시설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이용객의 욕구와 만족도, 수익성, 관리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되거나 증설되어 왔고, 같은 시설의 운영방식도 직영과 임대중에서 여러차례 변경해 왔다. 향군회관에서 시설사업에 의해 얻어지는 수익은 재향군인회의 사업유지 및 확대에 활용된다.⁵⁹⁾

(3) 국민연금에 주는 시사점

59) 이용하 외, 전게서, pp. 224-225.

① 사업계획과 제도적인 면

상록회관이나 향군회관은 운영주체나 서비스대상이 공무원, 재향군인 등 특수조직의 성원들이며 이 조직의 성격이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편이므로 회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도 그러한 측면이 보인다. 또한 이들의 대상수혜자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므로 일괄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상록회관은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으나 그를 중앙에서 모두 계획하고 감독하며 모든 계획에 대한 승인은 행정자치부를 거쳐야 하므로 각 지역회관 나름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에 즉시 적응하기 어려워 계획이나 계획의 시행중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더 나은 방향이 제시되더라도 수용하기 힘든 사항이 된다.

국민연금회관도 형편상 상록회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계획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부지매입 및 회관건립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비해 특별한 제한이 없었고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었다. 제한점이 있다면 예산, 건축법, 서비스 대상의 욕구 및 대상수, 건물주위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제한요구였으며 국민연금과 같이 상위 감독기관의 지침이 있어 건축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회관건립과 사업계획은 사업실시담당자의 자율성이 보다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융통성없는 상급기관의 건축제한으로 서비스 대상의 욕구를 등한시하고 주위건물과의 미관상의 균형을 잃게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⁶⁰⁾

② 회관의 시설관리 운영

60) 이용하 외, 전게서, pp. 232-233.

자신의 고유목적을 위해 건립된 각 기관의 회관들은 그 회관이 위치한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였다. 특기할 것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었고 상기기관들이 모두 이것을 시설설치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생활체육은 대체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공공기관에서 실시되는 수영장, 사우나, 음식점사업 등의 수익사업에서 오는 수익은 연금가입자, 회원, 주민 등의 후생복지사업으로 환원되므로 이용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서비스의 다양화에 기여하게 된다.

회관내의 각시설은 직접목적사업일 경우에는 직영으로, 간접적이거나 시설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로 운영되었다. 사무실임대는 지역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가 크나 대체로 안정되고 관리가 쉬우므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선호되고 있다.

③ 상징성 확보와 수익성고려

국내 타기관의 복지시설투자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복지시설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성 뿐 아니라 수익성차원의 실물투자적 성격도 제시되고 있다. 시설투자의 목적으로 복지성과 실물투자상의 수익성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금의 상당부분을 후생사업에 꾸준히 투자해 온 공무원연금⁶¹⁾이 최근 기금고갈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사업의 합법성을 찾으려는데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을 보완하도록 연금기금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였고, 후생복지사업은 수익성보다는 복지에

61) 김성숙 외, 「국민연금 실물투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p. 32.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공무원연금은 시설투자사업을 하여 온 과정에서 투자한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에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되어진다.⁶²⁾ 그러나 앞으로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의한 고수익을 올리는 시대가 다시 올 것으로 기대하기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약한 시설투자는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국에 걸쳐 회관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규모나 형태에서 연금상징적 성격을 고려할 수 있어, 국민연금회관 확보시 적정수익성을 확보하는 차원과 건물의 상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³⁾

2) 일본 후생연금회관의 운영

(1)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복지투자의 배경과 내용

일본 공적연금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하는 복지시설투자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후생연금보험과 국민연금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복지시설비에 의한 회관시설 등의 건축, 정비 등의 복지시설사업과 연금복지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대규모보양단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복지사업은 대체로 용자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후생연금의 복지시설사업

후생연금의 복지시설사업은 당초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형외과 요양 및 재활을 실시하는 시설인 후생연금병원으로 시작하였으나

62) <http://www.gepco.or.kr>

63) 김성숙 외, 전게서, p. 33.

그 후 병원 등의 요양시설 정비가 일단락됨에 따라 가입자의 욕구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종 연금복지시설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⁶⁴⁾

후생연금보험은 복지시설사업을 위하여 1953년 재단법인 「연금보험후생단」을 설립하여 후생단의 복지시설운영 초기인 1953년 11월부터 1958년 3월까지는 국가의 보조금과 대장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후생단이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유민영의 경영방식을 취하고, 이 시기에는 주로 정형외과요양소를 설치운영하였다.⁶⁵⁾

1956년도 예산에서 토지취득비가 인정되어 후생연금회관의 건립이 실현되게 되어, 1961년 낙성식을 갖고 후생연금회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동경의 회관이 「후생연금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후 각지방에 차례로 후생연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1964년 7월 동경의 회관은 「東京후생연금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는 東京후생연금회관을 비롯해 北海道, 愛知, 大阪, 九州, 湯河原후생연금회관이 설치되어 있다.

후생연금보험의 복지시설 신설상황은 1955년까지 병원부문의 정비충실기를 거쳐, 1960년대 후반의 노인복지시설(노인홈)의 설치가 일단락된 무렵,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 현에서도 후생연금회관의 설치를 요망하였다. 특히 熊本縣측은 1971년에 건설된 재단법인 熊本縣 사회보험회관을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제의를 하므로써 1974년 4월 동 사회보험회관은 「건강문화센타熊本후생연금회관」으로 명칭을 바꿔 이른바 「건문회관」 1호로서 발족되었다.

건강문화센타 후생연금회관은 대형회관과는 달리 지역밀착형으로서 교양

64) 이용하 외,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국민연금연구센터, p. 239.

65) 인정석 외, 「일본 공적연금 복지사업 출장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p. 8.

문화 부문 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증진부문과 노령연금수급자 등의 복지를 배려한 종합시설로서 현단위로 설치되고 있는데 현재의 건강문화센터 후생연금회관은 16개소가 있다.⁶⁶⁾

<표 3-10> 일본 후생연금 복지시설사업 개요

시 설 구 분			시설수	주 요 설 치 목 적	개설연도
후 생 연 금 보 험	병원 부문	후생연금병원	7	정형외과 중심을 둔 종합병원 4개소, 의학계열의 전문병원 3개소	1945-62
		보양홈	4	입원까지는 필요치 않은 자를 위해 일정기간 의학재활, 생활지도, 영양지도를 실시	1980-96
		간호사양성소	3	후생연금병원에 적합한 간호사를 양성	1958-59
	후생연금회관		21	복지증진, 교양문화의 향상도모, 대형5개소, 중소규모건강문화센터 16개소	1961-88
	노인홈		36	연금수급권자 건강하고 문화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1980-83
	선피아		24	건강지도, 체력측정 등에 입각한 정확한 건강유지 및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도모	1974-97
	휴가센터		17	수급자, 가입자 및 가족의 보양, 교양문화의 향상,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3세대 교류장소	1963-98
	스포츠센터		5	체력향상과 건강의 유지증진	1974-91
	선텔		1	후생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종신이용이 가능한 개호노인홈	1995

1999년말 현재 후생연금 복지시설사업은 <표 3-10>와 같으며, 복지시설사업은 1950년대에는 정형외과 요양소 등 근로자의 산업현장복귀를 위한 시설이 주로 설치운영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연금회관, 그리고 70년대부터는 건강, 노인복

66) 이용하 외, 전게서, pp. 240-241.

지를 위한 시설이 주로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공적 연금 복지시설사업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⁶⁷⁾

② 연금복지사업단의 보양기지사업

연금복지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연금보양기지 운영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사회의 노령화의 진전, 주휴 2일제 채택기업의 증가에 따른 여가의 유용한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1970년 중반으로 1974년 미키기지의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1977년 3월까지 11기지 모두의 매수를 완료한 후 80년에 2개 기지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1988년에 11기지 13개소를 건설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기지건설은 마무리되었고 시설재투자비 정도만 지출되고 있다.⁶⁸⁾

연금복지사업단은 설립당초 융자사업과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의 두 가지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설립 초기에는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험의 부족 등으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실시를 연기하여 왔다. 그러나 설립후 10년을 경과한 무렵부터 설립이래 선행한 융자사업이 순조로이 실행되었고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언제까지나 연기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⁶⁹⁾

이러한 배경하에서 1972년 후생성에서 연금 수급자에게 필요한 노후생활의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폭넓게 근로자의 건전하고 유효한 여가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보양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규모 연금보양기지 구상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전국에서 10군데 총액 2,000억엔(각각 100만평, 200억엔)이 소요되는 대형계획이었다

연금복지사업단의 대규모 연금보양기지 건설 및 운영은 사업을 시행하기로

67) 인경석 외, 전게서, p. 22.

68) 김성숙 외, 전게서, p. 18.

69) 국민연금기금운용연구센터, 「일본 연금복지사업단 30년사」, 1995. p. 3.

결정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 1973년 9월이었고 그 후 장소결정, 부지매입까지를 모두 마친 것은 1977년 3월로 3년 반이 걸렸으며 그후 1976년부터 1984년까지의 건설기간을 거쳐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에 걸쳐 11개 기지 13개소의 대규모 보양단지가 모두 개업을 하였다.⁷⁰⁾ 대부분의 시설은 4년 정도의 건설기간을 거쳤다. 이와 같이 대규모 보양기지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의 성격, 방향, 장소 등 모든 사업계획이 전문적으로 사전에 검토되어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운영방법은 미끼(三木), 오누마(大沼), 스난(律南), 이브스키(指宿) 4개 기지는 사업단이 발주하여 재단법인 연금보양협회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9개 기지는 현이 공사발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운영까지 맡도록 하였는데, 현은 다시 재단법인 그린피아를 설립하여 그 운영을 재위탁하고 있다.⁷¹⁾ 기지의 운영을 맡은 위탁처는 이용료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신고제(해당기관과 사실상의 협의제)를 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기지의 수지상황을 보면, 투자원금의 상한으로 인하여 누적적자가 있는 기지가 절반 정도 되나 전체적으로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⁷²⁾

(2) 일본 후생연금회관의 관리 운영

① 관리운영기관

후생연금제도 발족시부터 복지사업의 실시방법과 사업주체를 어떻게 정할지가 당면한 문제였는데 그 당시 실시방법으로서는 다음 세가지 방법이 거론되었다.

-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방법

70) 전게서, 「일본 연금복지사업단 30년사」, pp. 38-39.

71) 인경석 외, 전게서, p. 12.

72) 김성숙 외, 김성숙 외, p. 20.

- 기존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
- 새로 기관을 설립하여 실시하는 방법

위 방법중 1과 2의 방법은 효율성, 설립취지, 목적 등의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결국 3안이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재단법인 연금보험후생단」이 발족되었고(1943. 11. 19), 1948년 9월 14일 「재단법인 후생단」으로 변경, 나아가 1990년 6월 26일 「재단법인 후생연금사업진흥단」으로 개칭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후생연금회관의 관리는 재단법인후생연금사업진흥단 제2사업부 회관사업과가 관리하는데 회관사업과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후생연금회관의 경영기획, 지도, 감독
- 회관의 요금정책결정, 정비계획, 예산, 결산, 직원연수
- 회관운영과 관련된 각종통계의 분석, 신규시설의 설치조사, 개설준비 등

후생연금회관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탁경영으로 결정하고 1961년 4월 1일 후생성 보험국장과 재단법인 후생금사업진흥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후생연금회관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동경후생연금회관 개관과 동시에 재단법인후생연금사업진흥단이 회관의 관리운영을 맡게 되었다.⁷³⁾

후생연금보험의 수입과 지출 대비 복지시설비의 규모는 <표 3-11>과 같이 수입, 지출 모두에 대해 매년 1% 미만이며 대체로 매년 조금씩 증가되어 왔으며, 최근 보험료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출 대비 복지시설비 비중은 줄고 있다. 그러나 후생연금은 성숙된 상태이고 적립금 규모나 지출규모가 매우 크므로 복지시설비의

73) 이용하 외,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국민연금연구센터, pp. 241-242.

<표 3-11> 후생연금보험 수입액 및 지출액 대비 복지시설 비중

(단위 : 100만엔, %)

구 분	'93	'94	'95	'96	'97	'98
수입총액(A)	32,987,528	34,720,567	38,070,844	39,314,654	33,164,894	32,105,361
지출총액(B)	26,252,543	28,062,800	30,794,853	32,676,555	25,873,929	27,025,262
복지시설비(C)	182,133	175,784	195,055	203,435	229,804	232,026
C/A	0.55	0.51	0.51	0.52	0.69	0.72
C/B	0.69	0.62	0.63	0.62	0.88	0.86

주 : 지출의 구성 : 보험급여비, 제도간 조정계정에의 이월, 국민연금특별회계로의 이월,

구제간조정법조정교부금, 복지시설비 등으로 구성

자료 : 厚生統計協會(1999), 保険 と年金 の 動向, p. 202.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매년 복지시설에 꾸준히 투자되고 있어 시설투자에 상당한 금액이 축적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⁷⁴⁾

② 후생연금회관의 시설내용

후생연금회관은 근로자의 교양문화 향상을 위해 「후생연금회관 건설계획안」을 토대로 하여 각 회관 소재지 지역권의 중심적 존재로서 대형회관 혹은 건강문화센터로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생연금회관은 공적 서비스 시설이므로 이용요금이 저렴할 뿐만아니라 운용수익을 이용자에게 환원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후생연금회관의 시설은 회관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 東京厚生年金會館

- 규모 : 부지(6,823m'), 연면적(22,494m')

74) 인경석 외, 「일본 공적연금의 복지사업 출장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p. 23.

- 시설내용

- 학원 : 미술교실, 음악교실, 그림교실, 중학생교실, 어린이교실, 요리교실
양재교실, 다도교실, 능악(일본고유의 가면극)교실, 일본무용교실
서도교실, 조화교실, 영어회화교실, 기타 전통문화교실 등
- 호텔 : 양실 84실, 일본실 6실, 124명 수용
- 회의실 : 대·중·소 회의실을 포함해 모두 12개가 있음
- 결혼식장 : 피로연장 13실
- 홀 : 대홀 정원 2,400명 수용, 소홀 정원 706명 수용
- 기타 : 후생연금상담실, 바둑실, 마작실, 이·미용실, 식당 등

- 특기사항

정부가 설립한 근로복지시설로서 미국잡지 「라이프」에 소개되었으며 결혼식장은 개관후 현재까지 7만쌍 이상의 결혼실적을 올렸다.

학원사업은 교양과 취미생활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하여 각종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수강할 수 있다.

문화복지사업은 회관 개관시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익환원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문화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熊本厚生年金會館(健康文化센터)

- 규모 : 부지(7,580m'), 연면적(8,776m')

- 시설내용

- 호텔 : 양실 67실, 일본실 7실, 102명 수용
- 회의실 : 대·중·소 회의실

- 결혼식장 : 피로연장 9실
- 홀 : 대홀, 각종 연회장
- 기타 : 후생연금상담실, 식당, 매점, 체육관 등

- 특기사항

1976년부터 고령자와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고령자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78년도에는 새로이 건강지도 교실을 발족하는 등 고령자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부문은 유적과 명승지가 산재해 있는 熊本城 부근에 자리잡고 있어 안정된 객실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시내 유사시설 가운데에서 가장 넓은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다.⁷⁵⁾

(3)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주는 시사점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상황의 차이

일본의 공적연금 시설사업은 복지성을 일차의 목표로 하고 시행하는 동안 그러한 목표를 변경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목표가 가능했던 것은 일본의 고도 경제발전이 전후 계속되어 왔고 정부가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금기금으로 조달하였으며 그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시설사업 실시 초기부터 복지성추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수익성과의 균형이 요구되는 우리 국민연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의 공적연금의 재정문제가 크게 야기되어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연금이 도입, 확대되고 있는데다 최근 IMF 구제금융 하에서 연금기금의 재정안정 및 그를 위한 수익성 향상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

75) 이용하 외, 전게서, pp. 243-244.

므로 복지성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복지시설 투자사업은 실물투자임이 부각되고 있으나 사업성격은 일본 공적연금의 복지시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수익성 추구에 한계가 있게 된다.

② 사업시행의 계획성과 일관성

일본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하에 장기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에서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리의 복지타운 사업은 사업실시 전에 충분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사업성격, 부지매입, 장기적 사업방향 등이 설정 추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속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사업계획이나 사업성격이 변경되었다. 회관 확보사업은 비교적 계획성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규모와 사업성격이 역시 자주 변경되어 왔다.

③ 사업이 연금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복지시설설치사업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모두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만일 복지시설사업이 성격상 복지성이 수익성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면 공적연금 본래의 목적이 노령소득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의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은 직접시설투자인 대규모 보양단지 설치운영은 적립금 대비 0.2% 정도이고 복지시설비는 매년 지출대비 0.6-0.7% 정도이다.⁷⁶⁾

④ 시설설치는 기금으로 하되, 운영은 민간위탁방식을 취함

복지시설운영은 일본의 경우 민간위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연

76) 김성숙 외, 「국민연금 실물투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pp. 24-25.

금도 복지타운사업의 경우 공단을 경유하여 민간위탁경영을 채택, 공단직영은 전문성, 관료조직의 경직성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위탁경영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공단의 직접적인 시설설치·운영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주, 법인 등에게 복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⁷⁷⁾

77) 인경석 외, 전게서, p. 30.

IV. 國民年金會館運營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國民年金會館運營의 問題點

1) 법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

(1) 국민연금회관 건립과 사업추진계획의 미비

국민연금회관은 1991년 4월 말부터 매입 또는 건립이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초기안에서는 복지사업실시를 위하여 복지사업 실시준비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이 건의되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이러한 별도의 조직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재부에서 복지사업을 관장해 오다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1995년 2월 1일에 복지사업부가 신설되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조사의 실시가 어려운 현재의 여건에서 소규모의 직원으로 지역의 특성이 각기 다른 곳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 연금회관사업 추진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⁷⁸⁾

연금회관사업은 가입자, 수급권자의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초적이며 전국적인 규모의 방대한 사업인데 비해서 초기 계획과는 달리 철저한 준비에 기초한 사업실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회관사업은 회관확보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별 대지 및 건물규모가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지역실정과 부지규모 등에 따라 빌딩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관사업은

78) 이용하 외,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국민연금 연구센터, p. 174.

지역실정과 부지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를 개발하여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라는 틀 속에 얽매어 현실적인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⁷⁹⁾

모든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철저해야 하고 그러한 계획을 기초로 하여 실천이 뒤따를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때 연금회관사업 계획의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건복지부의 건축제한 지침의 문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금회관의 규모를 지침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대지는 지역에 따라 500평에서 2,000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건평은 2,000평에서 10,000평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규모가 작음으로 인하여 대지구입이 용이하고 회관확보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과 주로 사무실로 이용될 때 관리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 의해 얻어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연금회관의 부지는 대체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연금과 관련하여 금융 및 행정처리가 편하며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 등으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은 지가가 높으며 건물을 지을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건평 등을 제한하여 주로 연금관련사무 등에만 건물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다. 토지와 건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가능한 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일반

79) 김성숙 외, 전계서, p. 73.

적이라고 볼 때 특별한 사유없이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⁸⁰⁾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는 지역별 대지 및 건물규모가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지역실정과 부지규모 등에 따라 빌딩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⁸¹⁾ 현재까지 확보된 연금회관들을 볼 때 기존건물을 매입하였고 본부건물로도 활용되었던 강남지부회관만 지상 10층, 지하 3층, 연면적 4,637평으로 대지 782평의 약 593%로 가장 넓고 나머지는 본부 142%, 충북 70%, 경남 281%, 광주 492%, 대전 395%, 대구 356%로 500%가 넘지 않는다.(<표 4-1> 참조)

<표 4-1> 국민연금회관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 (단위 : 평, %)

구 분	본부	강 남	충 북	경 남	광 주	대 전	대 구	전 북	인 천	부 산
대지면적	2,623	782	582	918	625	697	863	1,210	845	1,460
연건축면적	3,714	4,637	406	2,580	3,072	2,755	3,068	3,025	3,014	13,384
용적율	142%	593%	70%	281%	492%	395%	356%	250%	357%	910%

한편 타기관의 부지이용율을 <표 4-2>에서와 같이 국민연금회관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으나 대체로 대지면적이 넓게 확보되어 있어 그에 비례하여 연건축면적도 넓고 대지와 건축면적이 자체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전적, 건축법상의 문제만 없다면 소요될 면적확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80) 이용하 외, 전계서, p. 175.

81) (주)씨드 50, 「국민연금 복지시설사업 평가 및 방향설정에 관한연구」, p. 110.

<표 4-2> 타기관회관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

(단위 : 평, %)

구 분	상 록 회 관				향 군 회 관		태 화 사 회 관	
	서 울	부 산	제 주	광 주	본 관	별 관	본 부	수 서
대지면적	3,482	1,254	1,123	15,347	7,643		1,080	1,296
연건축면적	13,500	7,904	4,654	9,468	7,500	6,408	7,500	3,774
용 적 율	388%	6305	4145	42%	182%		694%	288%

2) 연금회관 시설관리운영상의 문제

(1) 연금회관시설설상의 문제

연금회관에는 연금관련 사무처리시설이 설치되며, 사무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임대업을 할 수 있고,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28조에 명시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중 1항 1호에 규정된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자복지 등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 설치될 복지사업의 시설종류에는 대중목욕탕(휴욕실), 슈퍼마켓, 식당, 커피숍, 헬스클럽, 수영장, 이용실, 미용실, 연금매장, 다목적강당(예식장, 교육장 등 용도), 문화회관 등이 있으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다양한 시설사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회관의 용도를 보면 대부분 업무시설과 기타시설(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람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질적인 용도의 복합배치 및 복잡한 동선으로 건물전체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해당지역 및 부지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복리시설계획(회의실을 기본

으로 식당, 어린이집, 사우나 등의 설치)은 역지의 짜마추기식의 용도구성으로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운동, 문화 등 다양한 복지시설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회관 부지가 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이 대부분이므로 수익성을 고려한 용도구성을 하고, 복지시설은 지가가 낮은 지역에 순수 복지성에 맞추어 별도사업을 전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복지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용도구성이란 찾기가 어렵다.⁸²⁾

(2) 연금회관관리상의 문제

회관사업의 계획과 추진은 현재 복지사업팀에서 담당하며 기 확보된 회관운영은 총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회관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업무는 성격이 다르고 연금회관의 수가 아직 적으며 사업도 사무실 임대 등에 국한되어 단순한 편이므로 현재와 같이 처리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회관의 수가 계속 증가되고 회관사업이 더 복잡해지면 현재와 같은 단순한 조직체계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힘들 것이며, 서로 다른 부서의 업무분리관장 하에 상호업무에 대한 연결대책이 미흡할 경우 연금회관사업 전체의 기획 및 조정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2. 年金會館運營의 改善方案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의 연금업무를 위한 사무실확보, 실물투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1991년 시작된 연금회관사업은 공무원연금(1960년초 시행)

82) 김성숙 외, 전계서, P. 74.

이나 사학연금(1975년 시행)등이 회관사업을 1980년대 말에 시작한 것에 비하여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사전준비의 미흡과 획일적이고 편의적인 방식으로의 계획, 충분한 규모의 전담인원 부족등의 문제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연금회관의 건립과 사업실시의 개선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사항과 시설 관리, 운영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⁸³⁾

1)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1)회관 부지 및 시설용도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융통성 적용

국민연금회관확보사업은 현재 확보된 회관이 8개, 확보진행중인 회관 3개이며 2001년까지 7곳에서 회관을 더 확보하여 18개의 회관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금회관이 각지역의 중심부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회관의 연건평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 대지에 대해 2-5배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건물의 규모가 10층이하로 크지 않으며 연면적도 5,000평이하로 소극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나 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등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⁸⁴⁾ 이는 앞으로 연금가입자 증가로 연금관련 업무의 증가와 사무실 증가, 또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게 되면 기존의 불충분한 면적의 연금 회관에 대한 증축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장기계획 하에 보다 면적을 넓게 건축한 것에 비해 건물해체와 재건축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연금 기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회관부지 매입, 회관설계, 건립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욕구평가와 주변여건을 참조하여 계획,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에 국민연금관리

83) 이용하 외,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국민연금연구센터, p. 180.

84) 김성숙 외, 「국민연금 실물투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p. 10.

공단의 자율성이 보다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연금회관의 규모에 대한 현재 복지부 지침이 폐지되기 어렵다면 적어도 다음 표에서 제시하듯이 보다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3> 연금회관 규모에 대한 지침의 변경

구 분	현재(복지부지침)		변 경			비 고
	대 지	건 물		대 지	건 물	
A형(본부)	2,000	10,000	A형 (대형,본부)	2000평이상 본부2,623 평	10,000평이 상, 본부 12,500평이 상	· 본부 기매입 · 회관분 류는 지역 별이 아닌 규모별임
B형(직할 시,지부)	1,000	3,000	B형 (중형)	1,000~ 2,000	5,000~ 10,000	
C형 (도지부)	500~ 1,000	2,000~ 3,000	C형 (소형)	1,000평 미만	5,000평 미만	

또한 연금회관이 거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복지관련사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설이나 서비스 종류의 설치에 있어서도 한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한은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우므로 후생복지 서비스 강화에 있어서는 지방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설치제한 조항이 융통성있게 적용되도록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회관 시설설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례의 변경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2)연금회관사업을 위한 준비 운영의 철저

연금회관사업은 전국에 걸친 광범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립되는 것이므로 회관건립,

시설사업, 프로그램개발 등 제반사항에 있어 회관사업 준비를 위해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이용대상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욕구를 사전분석하여 적절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회관사업은 현재 각 지역에 적합한 고유모델의 사업이 계획, 실시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연금회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쳐 각 지역 별로 부지로 매입되는 주변지역특성, 연금회관에서 시행될 예정인 시설사업의 시장성과 복지성, 서비스대상인구의 특성 및 욕구분석, 서비스종별수요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요구되므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⁵⁾

또한 연금회관의 사업목표를 확실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전개한다. 연금회관은 사무실외의 공간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그것이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수익성에 대한 추구하고 아울러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대상의 인구계층에 있어서도 가입자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⁸⁶⁾

2) 시설관리운영의 개선방안

연금회관에 현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시설은 앞에서 언급한 일본후생연금에서의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며

85)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8), p. 416.

86) 장인협 외, 전개서, p. 361.

관리에 있어서도 독립된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설 운영과 관리면에 있어서의 개선이 요구된다.⁸⁷⁾

(1) 시설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후생연금회관은 설비 분담이 명확히 구별된 곳으로 사무실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을 통해 거기서 오는 이득을 복지 서비스에 투자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국민연금회관이 사회복지관 기능을 주로 할 수는 없겠으나 일부 서비스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연금회관은 고유업무를 위한 공간 외에 수익을 얻기 위한 임대용 사무실을 확보하고, 지역의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 후생연금회관과 같이 타 지역의 연금가입자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그를 위한 사전조사에 입각하여야 한다.

국민연금회관 시설설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사업
- ②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을 실시하되 기타 후생복지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함
- ③ 복지향상에 맞는 사업, 이러한 서비스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야 함
- ④ 중상층 이하를 주대상자로 고려한 사업설정
- ⑤ 연금회관이 건립된 지역에 맞는 사업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시설들도 사업실시 초기에는 운영비결을 몰라 사업실패

87) 이용하 외, 전게서, p. 212.

위험이 높고, 또한 전문적으로 운영할 직원의 확보 및 증원이 여의치 않으므로 임대 또는 수수료할당제 방식의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⁸⁸⁾ 회관운영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고유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운영이 간편한 것, 수익성이 낮아도 연금 이미지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사무실, 직매장, 체련시설, 다목적 강당 등)은 직영을 하고, 직원관리가 어렵거나 경영비결이 요구되거나 공공기관의 이미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음식업, 이·미용업, 호텔 등)은 임대,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존 공적연금과의 상호협조하여 오랜 경험이 축적된 타연금과의 공조체제를 갖추는 것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전반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공식적 통로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시설관리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현재 연금회관사업은 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복지사업팀이 관리하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총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회관 시설이 확장되고, 직영을 하게되는 사업종류가 늘게 되면 기존인력으로 대체하는 지금의 관리체계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회관사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따로 담당하는 회관사업운영부의 신설이 요구된다.⁸⁹⁾

88) 이용하 외, 전게서, p. 190.

89) 상게서, p. 214.

V. 結 論

소득수준의 증가와 세계·국제화 시대로 인해 복지수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국민복지요구가 표출되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연금 부담과 급여시점간의 장기적 시차로 인해 연금가입자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갖게 되어 거대규모의 적립기금 일부를 복지사업으로 전환하여 필수적 재정안정 및 국민복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연금회관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제 V 장에서는 일본후생연금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로 연금회관사업의 추진방향과 국민연금이 국민복지욕구 변화에 어떻게 발맞추어 가야 할 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

1. 연금회관사업의 추진방향

국민연금의 자금은 개인자금이 아닌 국민의 부담으로 인한 공적기금이므로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기초로 한 사업준비에 대한 철저함과 운영 면에서의 융통성, 그리고 실시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연금회관사업목적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하겠다. 연금회관사업은 국민의 복지와 투자에 따른 수익성여부 그리고 기금투자의 다양화를 통한 기금의 안정운영을 기초로 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후생연금을 보면 그 주목적을 가입자의 복지향상에 초점을 두어 실물투자를 통한 연금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라는 측면보다는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재원의 사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시행중인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하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과정에서도 설정된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구체적 예로 공적연금의 복지시설사업인 대규모연금보양단지 설치운영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입각하여 부지선정, 사업규모,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실시하였다. 또한 복지시설설치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지역마다의 사전조사를 거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반적 운영 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관치행정으로부터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른 시설용도 구성으로 자율화, 복지화가 이뤄져야 하겠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서울의 대도시권지역의 연금회관은 고유의 업무시설과 사무실 임대등을 통한 수익성에 기초하고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는 주요업무와 지역복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융통성이 요구되며 그외 근린상업지역에는 가입자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문화시설에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이와같이 운영이 되면 지역별 용적율과 관련된 부지이용면에서도 융통성을 갖게된다. 이를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신규회관 확보시 건축규모 적용(안)

구분	㉠형	㉡형	㉢형
특 성	청사+연금상징성 개발사업적 성격	연금상징성+복지 지역복지거점	청사+복지 자체사용중심
용도지역	중심업무지구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수익성	최대	보통	최소
복지성	최소	보통	최대
부지면적	1,000평		500평
연면적	10,000평		5,000평

이는 수익성과 복지성의 동시추구로 인한 회관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과 복지사업의 용도구성을 나눠줌으로써 시설사업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데에 기초를 둔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이처럼 실행하여 복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좋은 사례를 연구하여 활용하거나 국민연금보다 앞선 경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같은 타기관과의 협력으로 운영면에서의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복지사업의 명확한 성격과 융통성있는 운영을 이뤄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성 및 사회적 효과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

연금회관같은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부담에 의한 수익금으로 이뤄지므로 연금재정에 관한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복지에 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 민감히 받아들여야 하겠다.

복지사업에 대한 연금재정은 장기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재정에 관한 면에 있어서의 평가는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고려되며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더불어 연금회관사업에 관련된 복지사업의 이용자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더 나은 복지사업을 이뤄나가야 하겠다.

2. 국민복지 욕구에 대한 복지사업의 방향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은 결국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반영하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들이다.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때는 기존 연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에 대한 생각들이 앞섰으나 연구가 점점 마무리가 되면서 갖게 된 생각은 방법적인 문제에 앞서 복지의 주체인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의 운영이었다.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해 생존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 문화적 여유를 누리며 여가를 활용하고픈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복지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번듯한 건물과 그럴듯한 계획으로 이뤄진 사업이라고 해도 그 안에 복지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이용과 그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그것은 반쪽자리 사업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복지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연금회관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시적인,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기업의 이미지에 맞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사업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 內 文 獻

[단행본 · 간행물]

- 강길훈, 「국민연금기금의 장기관리 · 운용조직 방안」, 국민연금연구센터, 1999.
- 김성숙 외, 「국민연금 실물투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1996.
- 김성숙, 「국민연금가입자 복지투자 욕구에 관한 조사보고서」, 1996.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 ,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과제」, 서울 : 집문당, 1997.
- , 「사회복지학」, 서울 : 고현 출판부, 2000.
- 노병일, 「사회보장론」, 서울 : 나남출판, 2000.
- 민재성 외,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0.
- 변용찬,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사회복지 제40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9.
- 신섭중 외, 「한국사회복지법개설」, 서울 : 대학출판사, 1998.
- 이용하 외,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국민연금연구센터, 1995.
- 장인협 외, 「사회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8.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천성수, “노인 소득보장정책 확충방안”, 「노인복지연구 1999 여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1999.

최성재 외,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2000.

최일섭 외,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최일섭, “OECD 가입과 한국사회복지”, 「OECD 가입과 한국의 복지대책」, 국민복지추진연합, 1997.

한성윤 외, 「국민연금기금의 평가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1999.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0년사」, 1998.

—————, 「해외연금동향 (Ⅰ), (Ⅱ), (Ⅲ)」, 1996-1998.

—————, 「국민연금통계연보 (제11호)」, 1999.

—————, 「2000년대를 향한 국민연금 장기발전계획」, 1994.

—————, 「국민연금실무편람」, 1999.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와 발전과제」, 1995.

—————, 「노인휴양시설을 포함한 국민연금종합휴양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계획 및 교리지역 사업성 검토」, 1994.

—————, 「국민연금제도 도시지역 확대실시 1년의 평가와 발전방안」, 2000.

-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1995.
- ,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안」, 1996.
- , 「국민연금 복지타운 사업화방안에 관한 연구 I,II」, 1997.
- ,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 (III)」, 1997.
- ,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1998.
- ,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1998.
- 국민연금연구센터(역), 「일본 연금복지사업단 30년사」, 1995.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령집」, 1999.
- , 「98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1998.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1세기 한국, 복지사회로의 도전」,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자료집), 1999.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국민연금 복지타운 건립의 사업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997.
- (주)씨드 50, 「국민연금 복지시설사업 평가 및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2000.
- 코오롱씨드 50(주), 「국민연금회관 사업방향 연구」, 1997.

[논문]

- 박동영,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이재희, “국민연금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임미영,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체계에 관한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오근식,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3.

전상석,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기타자료]

인경석 외, 「일본 공적연금의 복지사업 출장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인터넷]

<http://www.gepco.or.kr>

<http://www.mogaha.go.kr>

<http://www.mohw.go.kr>

<http://www.npc.or.kr>

<http://life.edunet4u.net/apply>

<http://myhome.naver.com>

(附錄) '99 국민연금기금 결산·운용내역·사용내역 및 평가결과공시

'99 국민연금기금 결산 공시

국민연금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대 차 대 조 표]

(199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자 산		부채와 자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4,179,307,842,471)	I. 유동부채	(21,511,600)
(1) 당좌자산	(4,179,307,842,471)	1. 미지급금	0
1. 보통예금	0	2. 미지급비용	21,511,600
2. 기타제예산	162,100,000,450		
3. 기금보관금	126,417,958,010	부채비용	21,511,600
4. 단기예치금	1,174,319,610,531		
5. 미수금	57,297,029,739		
6. 미수수익	855,788,616,987		
7. 미수채권이자	29,020,623,238		
8. 유가증권	1,774,364,003,516		
9. 기타당좌자산	0		
II. 고정자산	(45,145,948,600,609)	자본(국민연금기금)	
(1) 투자자산	(45,145,948,600,609)	I. 자본금	(31,106,212,006,755)
1. 장기성예산	0	1. 연금급여적립금	31,079,787,417,920
2. 투자유가증권	12,359,601,599,271	2. 기금전입금	355,261,900
3. 재정자금예탁금	0	3. 결산상잉여금	26,089,326,935
4. 공공자금예탁금	31,857,319,000,000		
5. 장가대여금	929,028,001,338	II. 이익잉여금	(17,503,793,699,363)
6. 기타투자자산	0	1. 이익적립금	17,503,793,699,363
III. 회계조정계정	(300,784,747,238)	2. 차기이월이익잉여금	0
(1) 일반회계조정	(300,784,747,238)	(당기순이익 : 4,628,064,911,995)	(1,016,013,972,600)
1. 임차자금	48,426,012,888	III. 자본조정	1,016,013,972,600
2. 고정자산취득	186,355,213,508	1. 투자주식평가이익	
3. 복지사업자금	58,505,094,094		
4. 기타일반회계조정	7,489,426,748		
		국민연금기금총계	49,626,019,678,718
자 산 총 계	49,626,041,190,318	부채와 국민연금기금총계	49,626,041,190,318

2000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최 선 정

감사의견 : 적정의견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진 병 선

'99 기금운용현황 안내

○ 국민연금기금의 1999년도 총수입(만기회수금 제외)은 13,724,639백만원으로 연금보험료 수입 8,797,092백만원을 제외한 기금운용수익은 4,927,547백만원이며, 연금급여적립금 4,906,06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총액은 49,626,020백만원으로 이는 1998년도말의 39,444,594백만원보다 10,181,426백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99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 공시

국민연금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단위 : 억원)

구분	'99년도	수익율	비교
○ 조 성	583,615		
○ 지 출	113,692		
○ 운 용	469,923	12.80%	(100%)
<내 역>			
- 공공부문	318,573	8.45%	(67.8%)
- 복지부문	9,900	8.01%	(2.1%)
· 시설설치자금 대여	6,015	7.50%	
· 복지타운 설치	609	-	
· 생활안정자금 대여	598	8.35%	
· 실직자생계자금대여	2,678	8.65%	
- 금융부문	141,450	24.49%	(30.1%)
· 채 권	90,206	12.45%	
· 수익증권	14,885	14.16%	
· 신 택	5,390	17.06%	
· 정기예금	1,541	15.95%	
· 주 식	13,722	137.28%	
· 단기상품	15,706	5.94%	

※ 동아일보 2000. 9. 7

ABSTRACT

A Study on the Plan of Invest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Welfare Facilities

- Especiall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National Pension Center -

Lee Deok-Hee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Nation Pension Scheme is one of social insurance systems which objective is to provide pension venefits in contingency of old-age, disability or death of bread winner with a view to centributing to the stabilization of living and to the promotion of welfare of the nation.

The number of insurants and the amount of the Fund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re rapidly increased since implemeting in 1988.

The great amount of the Fund will have much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stability of the pension scheme according to the method of investing.

The sector of the Fund investment are public, banking and welfare.

It could be inves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Fund by distributing the resources systematically and balancingly.

We are recognizing the necessities of investing the Fund in welfare facilities as an alternative, especially a hedge against the inflation risk, considering getting reduced the sector of public and downgrading interest rates.

The insurants are getting suspicious of that scheme which is on the basis of accumulation fund raising system, because of the long term difference between contributions and benefits.

Therefore we have to invest in welfare facilities for giving visible and real benefits to the insurants.

The welfare Facility Plan of the scheme is implementing on the two sector of the National Pension centers and the welfare resort facilities.

That Center Plan has been beginning since 1991, and that resort facility Plan was begun in 1994 and finished on sep. 27. 2000.

Especially the Center Plan through buying and building them raises work efficiency and real value on the Fund through securing office rooms on investing real estates.

Thus that Plan is very desirable of upgrade the positive image to the nation.

That Plan is on the early stage. We have to manage it efficiently as well as to secure the Pension Centers and facilities.

On considering the situations,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necessities of the Pension Centers and functions.

Through that, the study is also to suggest the way of the Plan by examining the present state issues.

The greatest problems of it are unfaithful preparation for implementation, unreasonable regulations against the scale of the centers, and no alternatives for the establishment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That problems restrict us to the efficient using of the land and centers.

This study will verify the regulatory problems of constructing the centers comparative to non regulatory other pension center construction, scale of a center.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odel of the pension center plan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it.

We have to manage that plan on the early stage, more efficiently by continuing verification and coordination.